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 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용어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 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
- 나.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제명 변경
- 용어 변경 : 폐수종말처리장 → 공공폐수처리시설
 - 제명 변경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 나. 시설설치비 산출기준, 유지관리비 산출기준 변경(안 별표 1, 별표 2)
- 다.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표기 방식 변경
-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신설(안 별지 제7호서식)
-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세기본법」, 「개인정보 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제48조의2의 규정”을 “제48조의2”로, “공동 오·폐수처리장”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 다음 각 호와”를 “뜻은 다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장”이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내에”를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로, “사업자(장)를”을 “사업자 또는 사업장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폐수관거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를 ““폐수관거”란 각 사업자(장)가”로, “처리장으로”를 “처리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내에서 발생하는”을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

(장)가 배출하는”으로, “연결시키기”를 “연결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를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로, “처리장의 시설설치에”를 “처리시설의 설치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을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으로, “폐수관 종말지점에”를 “폐수관거 종말 지점에”로 한다.

제3조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농공단지”를 “구미시 내에 농공단지”로 한다.

제4조 전단 중 “시장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의 제목 “(폐수등의 배출)”을 “(폐수 등의 배출)”로 하고, 같은 조 중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를 각각 “제7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자는[별지제1호서식]”을 “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제4호 중 “10mm이하”를 “10밀리미터 이하”로, “맨홀등”을 “맨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00mg/ℓ 이상”을 “리터당 100밀리그램 이상”으로, “처리장”을 “처리시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을 “사업자(장)가 부담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유량계 및 pH계등)”을 “(유량계 및 pH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사업자는”을 “사업자(장)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단, 폐수배출유량”을 “다만, 폐수배출 유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기위하여 동기기”를 “하기 위하여 기기”로, “받아야한다”를 “받아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업자”를 “사업자(장)”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제7조 제4호”를 “제7조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량 계등”을 “사업자(장)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등”으로 한다.

제11조 중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를 “사업자(장)는 제6조에 따른”으로, “3일전[별지제2호서식]에 의거”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2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로, “항목중 BOD, COD, SS이외”를 “항목 중 고시된 이외”로 한다.

제13조 중 “사업자”를 “사업자(장)”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수”를 “배수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지시할 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시설 설치비의 부담”을 “시설설치비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설치”를 “사업자(장)는 처리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 중 “제14조의 규정에 의거”를 “제14조에 따른”으로, “이내에[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신고후 30일이내에 제14조 제 2항의 규정”을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으로, “사업자에게[별지제4호서식]”를 “사업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최초사업자에게”를 “최초사업자에”로, “3년이내”를 “3년 이내”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시설설치비의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을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로, “은행”을 “금융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납부기간중”을 “납부기간 중”으로 한다.

제18조 중 “6개월이상”을 “6개월 이상”으로, “부과시”를 “부과 시”로, “120%”를 “12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제3항 중 “의거 매”를 “따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제19조의 규정”을 “제19조”로,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별지제5호서식]에 의거”를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을 “(휴업 등 비정상가동 시 비용부담)”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정상가동”을 “비정상 가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비정상가동시”를 “비정상가동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개월이상”을 “1개월 이상”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월3회”를 “월 3회”로, “범위내”를 “범위 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있으며 이 경우 유량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를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제23조 중 “제12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제기한 경우에는”을 “제기한 경우에도”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납부하지”를 “완납하지”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을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1월”을 “1개월”로, “100분의 2에”를 “1000분의 12에”로 한다.

제26조 중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별지제6호서식]에 의거”를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으로, “10일이상”을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27조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규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자료의 제출명령등)”을 “(자료의 제출명령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폐수종말처리장”을 “처리시설”로, “조사케”를 “조사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년도”를 “다음연도”로 한다.

제29조 중 “본 처리구역내”를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로, “규정”을 “조례”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라”로, “30일이상”을 “30일 이상”으로, “미리 예고하여야”를 “예고하여야”로 한다.

제31조의 제목 “(배수설비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을 “(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제6조제1항”으로,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규정에”를 “조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있으며,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오·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수종말처리장의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폐수종말처리장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및 가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가 고지된 폐수종말처리장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 1]

시 설 설 치 비 산 출 기 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최초 시설설치비

(1) 부담기준 : 전체부지 면적에 분양 부지면적으로 한다.(3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

(2) 산출근거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KI} / \text{KT}$$

- As : 업소부담금액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00퍼센트 해당액

- KI : 처리장 준공 시 업소별 총 분양 부지면적

- KT : 처리장 준공 시 총 분양 부지면적

◦ 증설사업자의 증설사업비(폐수배출업체만 해당)

$$\bullet \text{ As} = \text{Fc} \times \text{Li} / \text{LT}$$

- As : 비용부담자가 분기별 또는 매년 부담하여야 할 개별부담금

- Fc : 용자금액(이자포함)의 100퍼센트 해당액

- LT : 설계 오염부하량

- Li : 증설 오염부하량 = (BOD부하 + COD부하) / 2 + 1.3SS부하

◦ 오염부하량 산출방법

- 공공폐수처리시설 준공당시 배출시설 허가증에 신고 된 예상 최대 오염 부하량을 기준 해서 산정

유 지 관 리 비 산 출 기 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circ A_s = 0.2M \frac{KI}{KT} + 0.8M \frac{QOI}{QOT}$$

기본요금 처리요금

- A_s : 업소 부담금액
- [직접경비 + 간접경비(직접경비의 10%) + 감가상각비(1,322,000원)]
- KT : 전체 입주업소 부지면적
- KI : 개별업소부지면적분양 부지면적
- QQT : 총 오·폐수배출 오염부하량
 - 폐수 : $BOD+COD+SS/2$
 - 오수 : $BOD+SS$
- QOI : 개별업소 오·폐수 오염부하량
 - 폐수 : $BOD+COD/2+SS$
 - 오수 : $BOD+SS$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배 수 설 비 설 치 (변 경) 승 인 신 청 서

신 고 인	상호 또는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사 업 장	사업장명칭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주생산품	
	착공예정일	년 월 일	준공예정일	년 월 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변경)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구비서류

1. 배수설비 설치내역서
 - 가. 공사실시 설명서
 - 나. 배수설비와 폐수관거의 접속관계
 - 다. 폐수 맨홀 복구 계획서
2.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통
3. 공정도 1통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을 예측한 내역서 1통.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시 설 설 치 비 부 담 대 상 신 고 서

신 고 인	상 호 또 는 명 칭	
	성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배 수 설 비 사 용 개 시 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각 1통 2.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 내역서 1통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서식]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별지 제4호서식]

시 설 설 치 비
(분기) 부담금 납부 고지서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부담근거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설치비 상환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소장			

영 수 증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미시장 귀하			

영 수 증
(분기) 시설 설치비 상환금

금 액	총계 : 원금 이자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미시장 귀하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조례 [별지 제5호서식]

영 수 증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영수증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부담근거			
수량	BOD	COD	SS
m ³ /일	mg/ℓ	mg/ℓ	mg/ℓ
부과일자 : 년 월 일 상기와 같이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부담금을 고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구미시 농공단지 사업소장 공공폐수처리시설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함. 구 미 시 장 귀하			

영수필 통지서

(월분) 유지관리비 부담금

금 액			
납부기한			
업 체 명			
대 표 자			
납부기관			
세입과목			
영수일자			
상기와 같이 정히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구 미 시 장 귀하			

■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독 축 장				
상 호		성명(대표자)		
주 소				
구 분	체 납 기 간	체 납 금 액		
		계	부 담 금	가 산 금
시 설 설 치 비				
유 지 관 리 비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수납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장 (인) 구미시장 귀하				
1. 기한 내 완납하지 아니할 때는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 부담금 징수 조례」 제27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2. 이 독촉장을 받기 전에 이미 납부하신 경우에는 폐기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 지소 ()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와 관련하여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와 관련하여 업체관리와 시설운영 관련사항 전달 전반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소, 연락처(휴대폰), 생년월일, 상호, 사업장소재지, 업종, 주생산품, 기타()
- 선택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입주계약해지시 까지

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 및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거부시에는 ()접수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의 이용을 열람·정정·거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동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구미시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u>제48조의2</u>의 규정에 따라 구미시 관내의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 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이라 함은 처리장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라 함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오수 및 폐수(이하 “오·폐수”이라 한다)를 배출하는 <u>사업자(장)</u>를 말한다. 3. <u>폐수관거</u>라 함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폐수를 집	<u>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u> 제1조(목적) ----- ----- ----- <u>제48조의2</u>----- ----- - <u>공공폐수처리시설</u>----- ----- -----. 제2조(정의) ----- ----- <u>뜻은 다음과</u> ----- -----. 1. “소장”이란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관리 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 ----- ----- <u>사업자 또는 사업장</u> ----- -----. 3. “폐수관거”란 각 사업자(장)가 -----

결시켜서 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4. 배수설비라 함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우수를 제외한 오·폐수를 폐수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라 함은 처리장에서 오·폐수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장의 시설설치에 소요된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장)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라 함은 폐수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관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본 처리장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한다.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시장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

----- 처리시설로 -----

---.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자(장)가 배출하는 -----

- 연결하기 -----
-----.

5. “부담금”이란 처리시설에서 -----

- 처리시설의 설치에 -----

-----.

6. “계량기”란 폐수배출 유량 -

- 폐수관거 종말 지점에 ----
-----.

제3조(처리구역) -- 처리시설---

----- 구미시 내
에 농공단지-----.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 구미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처리시설-----

나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오·폐수 처리 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의 징수를 포함한다.

제5조(폐수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폐수를 처리장에 유입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사업자는 오·폐수를 배출하기 이전에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할 때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별지제1호서식]에 따른 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

-----.

제5조(폐수 등의 배출) -----

- 처리시설-----
--.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

- 제7조에 -----
-----.제7조에--

-----.

② 제1항-----

-- 자는 별지 제1호서식-----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배수설비의 구조) -----

-----.

1. ~ 3. (현행과 같음)

4. 배수관 입구에는 유효간격 10mm이하의 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하며, 유지류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유지 차단장치를, 다량의 토사를 배출하는 유출구에는 적당한 크기의 모래받이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배수관 또는 맨홀등의 필요한 부분에는 방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생략)

6. 시간최대폐수량이 일평균 폐수량의 2배 이상과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과 격차가 100mg/ℓ 이상인 사업자(장)는 업체 자체적으로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장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폐수량 및 수질을 조정한 후 배수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의 설치공사는 해당 사업자(장)의 부담으로 하며, 공사시 파손되는 도로등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

4. ----- 1
0밀리미터 이하-----

----- 맨홀 등-----

-----.

5. (현행과 같음)

6. -----
----- 리
터당 100밀리그램 이상-----

----- 처리시설 -----

-----.

제8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 사
업자(장)가 부담하며, 공사 시
파손되는 도로 등 -----

② -----

----- 따른 -----

도 설비면허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9조(유량계 및 pH계등) ①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수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 폐수배출유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업소로서 유량계 설치가 부적당하다고 소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사업자(장)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게 하기위하여 동기기의 검·교정을 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받아야한다.

④소장이 비용부담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토록 관할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7조 제4호에서 규정한 스크린, 모래받이, 유입차단장치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

제9조(유량계 및 pH계 등) ① --
----- 사업자(장)는 ---

----- . 다만, 폐수
배출 유량-----

-----.

② (현행과 같음)

③ -----
----- 하기 위하여 기
기-----
----- 받아야
한다.

④ -----

--- 사업자(장)-----
--.

⑤ ----- 따른 -----
제7조제4호-----

-----.

⑥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유량계등 필요장치에 대하여 선의의 관리를 하여야 하며, 고의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폐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수개시 3일전[별지제2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배수기준) 폐수배출 사업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항목중 BOD, COD, SS이외의 항목에 대해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관리의 책임을 지며, 소장은 필요시 이의 개·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설치비의 부담

⑥ 사업자(장)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등 -----

-----.

제11조(사용개시의 신고) 사업자(장)는 제6조에 따른 -----

---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

-----.

제12조(배수기준)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 항목 중 고시된 이외-----

-----.

제13조(배수설비의 관리) -----
--- 사업자(장)-----
----- 배수설비에 대한 개·보수를 지시할 수
--.

제3장 시설설치비의 부담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장 시설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②제1항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별표1]과 같다.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폐수배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별지제3호서식]에 의거 소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설치비 부과) ①시장은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후 30일 이내에 제14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산정하여 해당 사업자에게[별지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되 납부기간은 최초사업자에게 대하여는 용자금 상환기간에 따라 분할 고지하고 증설사업자에 대

제14조(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

-- 사업자(장)는 처리시설 설치

-----.

1.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 제14조에 따른 -----

-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
-----.

제16조(시설설치비 부과) ① ----
----- 신고
고 후 30일 이내에 제14조제2항

----- 사업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 최초사업자에 ----

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
할고지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
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증설사업자의 경우 시설설치
비의 납부기간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폐수배출이 중단되었
을 경우 사업자는 폐수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증
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
의 신·증설 이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소장이 정상
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
시 산정된 오염부하량 120%를
초과할 경우 시장은 평균오염부
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산정
하여 차액분을 추가 부과할 수
있다.

----- 3년 이내-----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
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
의 납부대상자는 제16조-----

- 금융기관-----.

② -----
--- 납부기간 중 -----

-----.

제18조(시설설치비의 재산정) --

----- 6개월 이상-----
----- 부
과 시 ----- 120퍼센
트-----

-----.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지관
리비의 산출기준은[별표2]와 같
다.

③ 소장은 처리장 유지관리 실적
자료에 의거 매 2년마다 유지관
리비 산출기준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다.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
부) ① 소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시장을 대신
하여 월별로 산정·부과하되 해
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다음달 1
5일까지 사업자에게[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
른 부담금을 매월 25일까지 시
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
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등 비정상가동시 비용
부담) 휴업 또는 일시가동정지
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 비용
부담은 비정상가동 직전 3개월

제19조(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
----- 따라 -----

-----.

제20조(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
부) ① ----- 제19조-----

-----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
호서식에 따라 -----.

② ----- 제1항-----

-----.

제21조(휴업 등 비정상 가동 시
비용부담) -----

----- 비정상 가동 -----

간의 실적평균치의 기본요금과
인건비만 계상된 처리요금으로
산정한다.

1. 월간 폐수배출량으로 산정한
비용부담금이 비정상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의한 산출금
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이상
휴업한 오·폐수배출업소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소
장은 비용부담금의 산정을 위하
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배출되
는 오·폐수의 양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토록 하되 폐수배출량
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
는 월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
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
를 3개월 범위내에서 계속 인정
할 수 있다.

②제9조 단서조항에 의한 유량
계 미설치업소 및 오수배출업소
에 대해서 소장이 용수사용량,
종업원수 등을 기준으로 추정,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
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후단

-----.

1. -----
----- 비정상 가동 시

2. ----- 1개월 이
상 -----

제22조(오·폐수량의 산정) ① --

-- 월 3회 -----

----- 범위 내 -----
-----.

②----- 따른 ----

----- 있다. 이 경우 유량
산정방식은 입주업체와의 협의
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

신설>

③ (생략)

제23조(부담금의 추정) 소장은 사업자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배수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함으로써 폐수관거나 처리장 시설물 또는 폐수처리에 장애를 주었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이의신청)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액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③ (생략)

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자동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부기한이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부담금의 추정) -----
----- 제12조-----

-----.

제24조(이의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제기한 경우에도 --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가산금 및 증가산금) ① -----
----- 완납하지 -----

--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
하는 -----
-----.

② -----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
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하 “증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
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을 가산하
여 징수한다. 이 경우 증가산금
의 합계액은 체납된 부담금의 1
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6조(독촉) 부담금을 그 납부기
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장은 납기경과후 15일 이내에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독촉장
을 발급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
급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정한
다.

제27조(체납처분) 사업자가 독촉
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
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
한 경우 소장의 요청에 따라 시
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의 규
정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 체
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소
장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필

----- 1개월-----
----- 10
00분의 12에 -----

-----.

-----.

제26조(독촉) -----

-----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
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

----- 10일 이상-----
--.

제27조(체납처분) -----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

-----.

제28조(자료의 제출명령 등) ① -
--- 처리시설 -----

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케 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연도의 월별 용수사용량, 폐수량, 제품생산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본 처리구역내에서 폐수나 오수를 배수하는 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규정에 따라 취득 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30조(사용의 제한) ①소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수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을 제한할 때에는 30일이상의 기한을 두고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제31조(배수설비등 시설설치의무

----- 조사하게 -----.
② ----- 다
음연도-----

-----.

제29조(권리, 의무의 승계) 처리시
설의 처리구역 내-----

- 조례-----

-----.

제30조(사용의 제한) ① -----
--- 그 밖의 -----

-----.

② ----- 따라 -----
----- 30일 이상-----
- 예고하여야 -----.

제31조(배수설비 등 시설설치의무

불이행)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유량계 · pH계 등
이 규정에 따른 시설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장은 임
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배출되는 오 · 폐수가
처리장에 유입될 경우에는 비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오 · 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후단 신설>

불이행) ① 제6조제1항-----
----- 제9조---

-- 조례에 -----

-----.

②-----

----- 있다. 이
경우 오 · 폐수량의 산정 방법은
제22조제2항을 따른다.

관계법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배출하기 위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한국환경공단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 준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아니하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①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인자(이하 "원인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이

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이라 한다) 및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원인자의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과 관계되는 오염의 정도
2. 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축적된 기간
3. 수질오염물질의 원인이 되는 양
4.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원인자 외의 자가 이용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전체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만을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부족재원을 충당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

액으로 한다.

1.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과 질
3. 수질오염물질 처리비용
4. 자본금, 종업원 수, 연간 제품생산량 및 매출액 등을 고려한 사업 규모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 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 「지방세기본법」

제59조(가산금)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0조(중가산금) ①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59조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 ③ 생략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대통령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감사원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시행일 : 2017.3.30.]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 ④ 생략

소관 실 · 과		환경안전과
입 안 자	과 장	문 경 원
	담 당	우 준 수
	담 당 자	김 형 순 (480-5282)